



石油類 稅制 小考

石油産業은 第2次 石油危機 이후 未曾有의 不況으로 심각한 시련을 맞고 있다. 石油産業의 不況과 經營악화는 기본적으로 景氣침체의 장기화와 脫石油에 따른 油類수요의 부진에 기인하지만, 또 한편으로 稅收중 상당한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石油類稅의 重圧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石油類稅의 重圧은 石油産業뿐만 아니라, 産業全般과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 코스트의 加重要인이 되어 石油類稅의 완화 내지는 石油類稅制의 근본적인 改편을 要求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石油類稅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特別消費稅는 그 課稅대상품목이 지금 部分稅라는 견지에서 産業全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우선 特消費稅는 課稅物품에 차등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課稅産業과 非課稅産業 사이에서 경쟁의 제한요인이 발생한다. 例를 들면 課稅대상인 輕油를 많이 쓰는 産業과 非課稅대상인 병커C油를 많이 쓰는 産業사이에서 병커C油를 많이 쓰는 産業에 有利한 경쟁을 가져다 주게 되며, 이는 결국 資源배분 效果面에서도 크게 作用을 하게 되고 自칫 잘못하면, 非課稅대상 資源의 過度投入과 課稅대상 資源의 過少消費를 가져온다. 이같은 例는 휘발유에서 端的으로 찾아 볼수 있다.

또 같은 課稅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産業과 低率과세되는 産業간에서도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 産業間 競爭에서 中立的이어야 할 租稅가 이같이 中立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點은 특히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아주 중요한 問題가 된다.

또 石油産業의 立場에서 보면, 揮發油에 대한 과도한 特消費 부과는 휘발유 소비감퇴를 초래함으로써 全体 石油需給구조에 괴리를

가져오게 된다.

特消稅는 그 성격상 課稅 대상의 선정이나 稅率의 책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國民의 消費構造가 급격히 변화하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 사치품의 한계를 정하는 일이나 취미, 오락용품등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課稅 대상에 包含시키거나 除外시키는 일등은 대단히恣意的이며 主觀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게 된다. 多樣化등에 相應하여 課稅 대상이나 稅率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게 되면, 稅負擔의 不均衡이 크게 深化된다는 點이다.

揮發油 및 輕油에 대한 特別消費稅率 推移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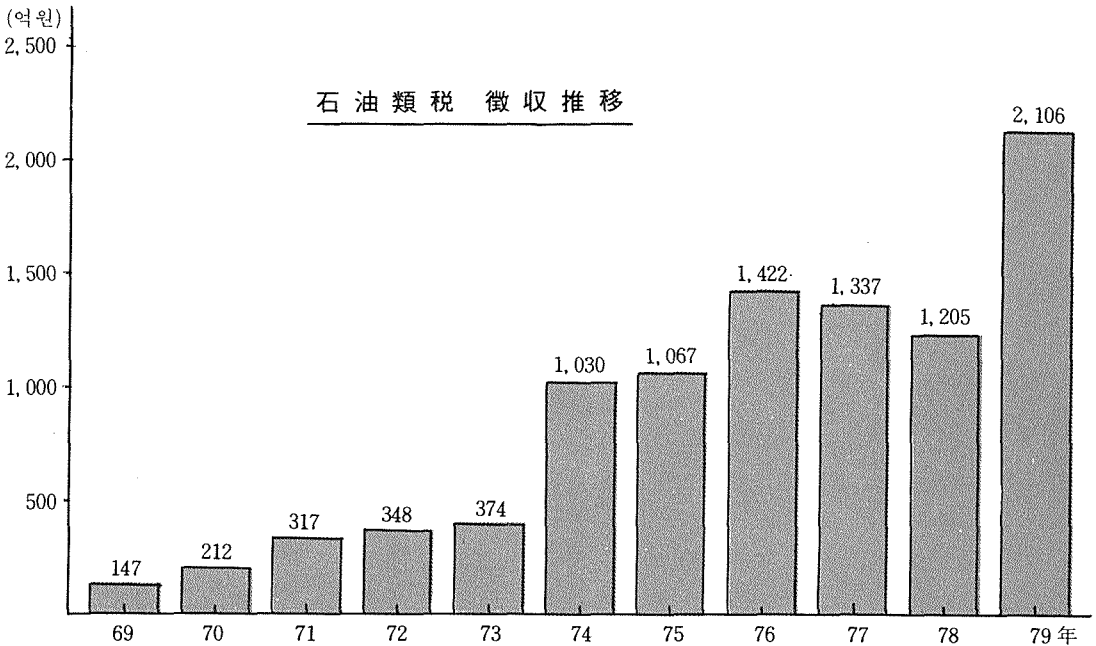
| 區 分 | 1970~1973 | 1974~1976 | 1977~1980 |
|-------|-----------|-----------|-----------|
| 揮 發 油 | 200 | 300 | 160 |
| 輕 油 | 40 | 40 | 10 |

註: 大統領令으로 輕油는 80年 8月 24일부터 7%,
揮發油는 80年 11月 19일부터 130%임.

現行 우리 나라의 石油類稅는 從價稅로 되어 있어 油價가 인상될수록 稅收는 加速的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으며, 國家經濟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다른 部門에도 공통적으로 適用되고 있는 附加價値稅나 防衛稅를 제외하면, 特別消費稅의 課稅品目과 그 稅率이 특징적이다.

石油類製品中 揮發油와 輕油에만 特別消費稅가 부과되고 있으며, 揮發油에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外國의 石油類稅制와 比較해 보면, 日本의 경우 石油關聯稅는 關稅 이외에 加算稅, 輕油去來稅, 石油가스稅, 航空機燃料稅 및 78年 6월부터 새로 시행된 原油 및 輸入石油製品에 대한 石油稅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定額稅이며 稅收의 用途가 特定化된 目的稅이다. 石油類製品中 벵커-C油에는 石油消費稅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燈油와 輕油의 稅率이 比較적 높은 것이 특징이다.



資料: 石油協會報, 1981. 12.

石油産業이 国营인 CPI(中国石油公司)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台湾의 경우, 石油類에 대한 税金은 物品稅만이 부과되고 있으며, 기타 税金과 基金등이 一切 없는 것이 특징인데 物品稅는 他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揮發油稅와 병커-C油稅率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

石油類稅率의 國際比較

| 韓 国 | 日 本 | 台 湾 |
|----------------|------------|-------------|
| 1. 從價稅 | 2. 從量稅 | 1. 從價稅 |
| 2. 特別消費稅 | 2. 揮發油稅 | 2. 石油類物品稅 |
| 휘발유: 130% | 배럴당 8.553엔 | 揮發油: 13.7% |
| 경유: 7% | 3. 石油去來稅 | 燈油: 8.04% |
| 3. 附加價值稅 | 배럴당 3.863엔 | 輕油: 13.03% |
| 모든油類: 10% | | 병커C油: 3.08% |
| 4. 防衛稅: C.I.F의 | | |
| 2.5% | | |

資料: 石油協會報, 1981. 12.

인 税金으로 인해 油價引上이 있을 때마다 揮發油·輕油와 다른 석유류와의 가격격차는 계속 벌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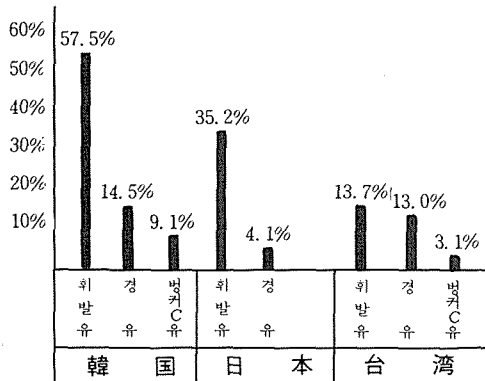
特別消費稅의 부과가 油類消費절약을 위한 것이라면 石油類의 대부분이 生産部門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절약의 여지도 生産部門에 더 많은 것임을 감안할 때 揮發油에만 부과될 것이 아니며, 또한 揮發油가격의 결정은 国内 自動車産業의 육성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揮發油및 輕油에 대한 特別消費稅가 稅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特別消費稅의 급격한引下나 폐지는 財政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데에 또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政策은 「脱石油」, 財政은 「石油依存」이라는 방침이 石油産業에 큰 重圧이 되고 있는 現狀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理想的인 租稅란 公正해야 하며, 公共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해야 하고, 또 효율적인 資源配分을 이루는 經濟的 요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現行 稅制의 개선은 소비자가격의 지나친 상승억제와 함께 다른 石油類에 비한 租稅衡平의 문제, 그리고 財政收入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租稅政策方向은 石油價格의 인상이 있을 때마다 税金의 부담을 줄여 나감으로써 소비자가격상승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우리 나라의 石油需給構造가 重質油수요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 油價引上요인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油價自律化와 관련한 수입 자유화시 国内精油産業을 보호할 수 있는 稅制운용이 필요하며, 또 현재 일부 油種에 과다하게 偏重된 油類特別消費稅를 완화하여 이를 関稅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金乾洽·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

石油類의 消費者價格중 税金의 比重



資料: 石油協會報, 1981. 12

현재 揮發油및 輕油에 부과되고 있는 高率의 特別消費稅는 油類의 소비가 價格에 대해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매우 非彈力的이라는 측면에만 너무 집착된 租稅政策이며, 유독 輸送·交通部門의 投入財인 이 두가지 油類製品에만 差別的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데에 대한 근거가 박약하고, 이러한 差別的